

의안번호	2203200
의 퇴 인	백승아 의원
회 답 일	2024.09.06.
추계번호	24C3157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대부등에 관한 특례)	(제5항)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그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¹⁾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

1)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려는 경우 폐교재산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임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학업중단학생은 약 5만명, 부적응 중단자는 약 3만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3년 기준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 1,337학급·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원적교 학적 유지) 379곳·대안학교 51개교 등이 운영되고 있음²⁾

□ 개정안이 실시될 경우 폐교재산 중 일부에 대한 무상대부가 실시되어 재정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건수, 폐교 소재지·가격 등에 대한 예상이 어려워 수입감소분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사용료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³⁾,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교육용시설”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폐교재산이 ‘무상’으로 대부되는 경우가 증대되어 재정수입이 감소될 수 있음

-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의 폐교재산(학교수)는 총 3,955교이고, 이 중 매각완료된 2,609교를 제외한 1,346교를 보유중이며, 이 중 539교는 임대, 440교는 자체활용 중이고⁴⁾, 미활용 폐교재산은 367교임

- 한편, 개정안에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와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

2)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2023.11. 관계부처 협동)

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폐교재산은 교육시설 186교, 사회복지시설 27교, 문화시설 66교 등의 용도로 총 539교가 대부(임대)되고 있으며, 440교가 자체활용되고 있음(자료: 2024년 폐교 활용 현황, 2024.03.01.기준, 교육부)

[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의 폐교재산 사용 내역(2024년)

시·도	폐교명	소재지	대부자	연간대부료 (천원)	비고
광주	삼도남 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삼도동 823-1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새날학교)	무상	대안교육위탁 교육기관
광주	하남 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하남동 395	사단법인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돈보스코학교)	무상	
경기	점동초 뇌곡분교장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뇌곡리 172-1	이00 (여주민들레학교)	7,951	
전남	해룡초등학교 농주분교장	전남 순천시 해룡면 농주리 12	사랑어린이마을배움터	4,694	대안교육기관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대부시설 중 일부가 무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타용도 임대시설 또는 미활용시설에 대한 무상대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무상대여가 실시될 폐교재산의 소재지 및 가격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이에 개정안 관련 재정소요를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